

의안번호	2213088
의 퇴 인	이만희 의원
회 답 일	2026. 3. 11.
추계번호	25B5181

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의2(재정지원) 신설	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과 민관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 운영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1조의2(재정지원) 신설	·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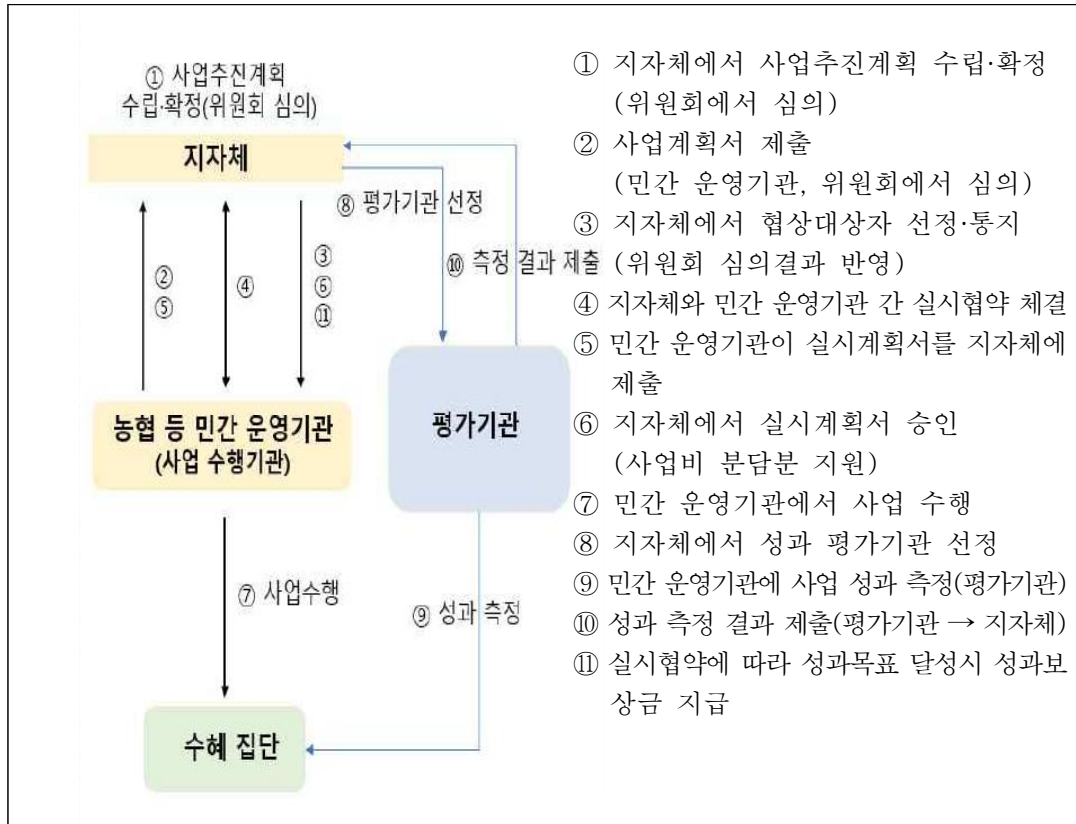
□ 재정지원(안 제11조의2 신설)

- 현행법 제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으로서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<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대상 요건>

- 지역농림어업 문제의 해결, 농림어가의 소득 증대, 농산어촌 경제의 활성화 또는 농림어업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- 지역의 경제·사회적 편익이 증진될 수 있는 사업
- 지역농림어업인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
-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
-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으로 창출되는 성과이익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여야 할 성과보상보다 큰 사업

<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추진체계>

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

-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과 민관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간 운영기관¹⁾으로 지정된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1)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5. "민간 운영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자 중 제8조에 따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을 운영·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.

가.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법인

나.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

다. 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과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

라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 같은 법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

마. 「산림조합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과 같은 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

바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

사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회적기업

아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소상공인

자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중소기업

- 다만,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운영기관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자·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지원 대상 민간 운영기관의 수, 지원 기준·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onet@na.go.kr